

화재손해의 범위(하)

이순관
〈보험감독원 조정역〉

〈전호 화재손해의 범위에서 ‘화재의 의미’ 계속〉

다. 미국의 화재정의

미국에서 화재보험의 담보위험으로서의 화재정의는 2차세계대전 전후를 불문하고 사용목적을 위한 불, 즉 불이 있어야 할 일정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 불인 Friendly Fire와 그러하지 아니한 불인 Hostile Fire(Unfriendly Fire)로 구분하며, 보험증권에서 말하는 Fire는 Hostile Fire(비우애화)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약관 문언의 해석 또는 계약당사자의 의도로부터도 타당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다만 루이지애나 주의 Salmon V. Concordia Fire Ins. Co.(1935) 사건이나, 인디애나주의 Owens V. Milwaukee Ins. Co.(1955) 사건처럼 보험목적 물이 소각로등과 같은 사용목적을 위한 불에 소실된 사건에서 Friendly Fire라는 보험자 주장은 배척되어 Fire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Friendly Fire(우애화)와 Hostile Fire(비우애화)로 구분해야 할 것은 아니라는 예외적인 판례도 있기는 하다.)

그리하여 불이 피보험자의 의도에 의해 점화되어 의도된 일정 장소에 있는 한 그 불에는 우연성은 없어 Friendly Fire에 지나지 않고, 그 장소를 우연히 벗어나 의도되지 않은 장소로 이탈하게 되면 Hostile Fire로 변화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버너의

조작과실, 기계고장이나 연도의 결합 등이 원인이 되어 과열이 생기거나 연기·그을음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불이 있어야 할 장소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Friendly Fire에 의해 생긴 손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의 보상청구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 불이 있어야 할 장소를 벗어났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타서는 안될 목적물이 우연히 탓는지 여부를 화재의 기준으로 삼는 Harris V. Poland(1941) 사건이후의 영국의 화재정의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미국의 일부 판례에서는 피보험자의 사용인이 스토브에 연료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상한 열·연기·그을음 등이 충만하여 자재가 손상된 사안에 대하여 불은 스토브로부터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불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변화한 것으로 보아 Hostile Fire에 의한 손해가 생긴 것으로 인정한 사례 [O'Connor V. Queen Ins. Co. (1909)]도 있고, 또한 조정기가 고장이 나서 심한 고열이 발생하여 불자리위에 놓여 있던 목적물이 손괴된 사안에 대하여 불은 있어야 할 장소로부터 이탈하지는 않았으나 불이 제자리에 있어도 이상할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됨으로써 Hostile Fire로 전

환되었다고 보아 보험자 유책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L.L. Freeberg Pie Co. V. St Paul Mutual Ins. Co.(1960)」

그러나 위 사례는 불이 일정 장소에 머무르고는 있었지만 불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되었기 때문에 Hostile Fire로 인정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불의 성격변화에 의해 우연한 불로 변화하였다 는 견해에 의한 것으로 앞서 소개한 영국의 Harris V. Poland 사건과 같은 계열에 속하는 사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상과 같이 미국에서는 현재도 화재보험의 담보위험으로서의 Fire는 그 발생, 존재, 활동 상황이 이상할 것을 요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필수 요건인 우연성을 결여한다고 봄으로써 영국과는 전혀 다른 견해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독일의 화재정의

독일의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조는 화재보험자의 보상책임 및 화재의 정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보험자는 화재 및 낙뢰, 등화용 가스 및 조명기구의 폭발, 주택 및 가재보험의 경우에 모든 종류의 폭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보호를 부여한다.

② 화재라 함은 어느 일정한 화

상없이 발생한 불 또는 그것을 이 탈하여 자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불(손해화)을 가리킨다. 화재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서 손해가 생긴 경우(초손) 및 유용한 불, 가공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놓 이게 됨으로써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보호가 되지 아니한다.……」

독일약관에서는 화재와 불을 구분하고 있으나 화재는 불이어야 하므로 발화·점화로 인한 것이 아닌 열·연기·그을음 등으로 인한 손해는 화재손해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불이란 일정한 화상없이 발생하거나 그것을 떠난 불이어야 하며, 난로·곤로·램프 등의 난방용이나 주방용의 유용한 불은 평소 사용하는 불로서 원래 있어야 할 화상에 있는 불이므로 화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불은 자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불을 의미하므로 담배불이나 성냥불이 마루바닥이나 카펫에 떨어진 경우에는 화재가 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화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독일에서는 손해화(영·미에 있어서의 일종의 Fortuitous Fire, Hostile Fire)는 화재가 되고 유용한 불(Friendly Fire, Domestic Fire)은 화재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다.



마. 결론

이상과 같이 주요 선진국에서의 화재정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화재보험에서의 화재정의와 화재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의 손해에 관한 보험자 책임범위를 명백히 확정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명확히 결론을 내릴 수 없는 하나의 어려운 문제라 하겠으나, 선진제국에서의 화재정의를 감안하여 정리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나 동산에 불이 붙어 자력이나 독립적으로 연소작용을 일으켜 확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화재보험약관에서 말하는 화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용목적을 위해 정상적으로 불자리나 화상에서 연소중인 불(난로나 곤로의 불), 취사, 조명, 물건의 제조 등을 위한 불은 명백히 불이기는 하지만 화재보험에서 말하는 화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담배불이나 성냥불이 카펫에 떨어져 초손을 입힌 경우(물론 담배불이나 성냥불이라 하더라도 종이 등에 불이 붙

어 연소·확대할 수 있는 경우는 화재라 할 수 있을 것임), 난로 등의 열작용에 의한 벽이나 가재의 그을음·연기손·초손·변색·변질 등은 화재손해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보험목적인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고 그 결과로써 건물벽, 집기, 비품이나 가재 등에 초손·연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Friendly Fire에 의한 손해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Hostile Fire는 이미 발생하였기 때문에 Hostile Fire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풀이하여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어도 문제는 없을 것임.)

마지막으로 보험의 목적인 보석을 난로속에 잘못 빼뜨려 보석이 훼손된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보상이 되나, 미국·독일에서는 보험보상으로부터 제외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보험분쟁사례나 판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선진제국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보석과 같은 고가품이 일반대중에 보급됨으로써 그러한 고가품에 대한 보험수요가 증가됨과 아울러,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이므로 보험분쟁의 사전예방측면에서 면책조항이나 담보조항 등을 삽입하여 보험자의 보상대상 내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